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5-23

제출년월일 : 1995. . .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청 소 과)

1. 제안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일부개정 공포(95. 2. 6)됨에 따라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및 품목을 확대하고 대상사업장별 세부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를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인 쓰레기 줄이기가 구민 생활속에 조기정착 되도록 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16조, 제40조 내지 제42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3. 주요골자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규제대상 범위확대와 적용대상 1회용품 종류 확대

○ 숙박업소의 규제대상 규모 확대(객실 30실 이상→객실 7실 이상)

○ 판매업소에서의 비닐봉투 1회용품 쇼핑백 사용의 규제대상 범위확대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매장면적 200㎡ 이상인 판매점 추가)

○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억제 추가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 · 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표1" 중 "폐기물관리법"란 "제2호" "가목"중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가목" 중 "객석면적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 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나목" 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 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나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중 이쑤시개의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차위반 300(천원), 2차위반 500(천원), 3차위반 1,000(천원)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다목" 중 "목욕장에서"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라목" 중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마목" 중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바목" 중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사목" 중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부과금액(천원) 중 "1차위반 2,000"을 "1차위반 1,500"으로 한다.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차위반

1,000(천원), 2차위반 2,000(천원), 3차위반 3,000(천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제1호 사목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조문대비표

적용법	현행				개정(안)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관리법	1. (생 략) 2.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일반폐기물 배출시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50	50	1. (현행과 같음) 2. .... 가. ....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50	50

신·구조문대비표

적용법	현행				개정(안)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5조제5항)				1.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5조제5항)			
	가.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2,000	3,000

신·구조문대비표

적 용 법	현 행				개 정 (안)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신·구조문대비표

적용법	현행				개정(안)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				나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다. 목욕장에서 …… …… …… …… (1) (생략) (2) (생략)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적용법	현행				개정(안)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라.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 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1) 현행과 같음	1,500	2,500	3,000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500	3,000	(2) (현행과 같음)	1,000	2,500	3,000
	마.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마.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신·구조문대비표

적용법	현행				개정(안)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바.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바.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사.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신·구조문대비표

적용법	현행				개정(안)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 설)				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